

관련 외환거래약 정서 조항	변경전	변경후	변경 내용
제8조	<p>제 8 조 인도일 산정</p> <p>①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 (한국 및 해당 통화국에서의 은행 영업일을 말함, 이하 같음)로부터 기산하고,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.</p>	<p>제 8 조 인도일 산정</p> <p>①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약정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 (한국 및 해당 통화 사용 국가/지역에서의 은행 영업일을 말함, 이하 같음)로부터 기산하고,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.</p>	<p>외환거래약정서상 '해당 통화국'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'해당 통화 사용 국가/지역'으로 변경</p>